

제253회 정례회
2006. 9. 4.(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-

1. 제안자 : 이종호 위원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- 제안일자 : 2006년 9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
2006년 9월 4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의회의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,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)
-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50일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.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,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함.(안 제4조)
-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안건과 기타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-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함.(안 부칙 제2항)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정례회의 집회일 및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41조제3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
-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또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또는 12월중에 집회토록 하고 있으므로
-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